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정 보 위 원 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사권 폐지 및 수집 정보의 신원조회 활용 금지 등〉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23호)

2024. 11.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3
III. 검토의견	4
1.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지원 요청권한 삭제	4
2.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폐지	9
3. 범죄정보의 제공 등 정보 공조체계 구축 의무 구체화	17
4. 수집 정보의 신원조회 목적 활용 금지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기현 · 윤건영 · 박해철 · 박민규 · 김남근 · 김성희
복기왕 · 김원이 · 박상혁 · 이용우 · 강준현 · 조계원
박홍근 · 박희승 · 김 현 · 윤종균 · 안태준 의원(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3.
3. 회부연월일 :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 내란죄 · 외환죄 등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바, 수사권은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러한 헌법 원칙의 적용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조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 · 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역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이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더하여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예산과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입맛에 맞는 사건정보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음.

한편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인사검증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규정은 법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이고,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음.

이에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공수사권 이관을 실효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또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원조회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정부인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가정보원이 내란죄·외환죄·국가보안법위반죄·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등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삭제).
- 나.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삭제).
- 다.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게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
- 라.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조 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지원 요청권한 삭제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의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 조회·확인,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및 협력) <삭 제>

다른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권한은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행정수단으로, 특정한 업무가 둘 이상의

기관 등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될 때 다른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는 것을 말함¹⁾).

동 조항의 연혁을 보면, 1961년 6월 10일 제정된 「중앙정보부법」 제7조제1항에서 “중앙정보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1963년 12월 14일 「중앙정보부법」 전부개정으로 “부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4조)고 규정하였음.

동 규정은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법」으로 개정된 뒤에도 같은 형태로 유지되다가, 2020년 12월 5일 「국가정보원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현행 규정으로 개정됨.

이러한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외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²⁾, 「공공주택 특별법」³⁾, 「의료법」⁴⁾, 「부패방

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16.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⁵⁾, 「출입국관리법」⁶⁾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료의 제출 외에 ‘사실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례로는 「검사징계법」⁷⁾, 「공증인법」⁸⁾, 「국가인권위원회법」⁹⁾,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의2(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4) 「의료법」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③ (생략)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6) 「출입국관리법」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조사

2. 삭제

3.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검사징계법」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공증인법」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 ④ (생략)

⑤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1) 등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국가기관·단체의 사실확인 및 자료 제출 등 협조는 국가정보원의 모든 직무수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안보위해 혐의자의 신원 특정은 물론 기초 사실관계 파악조차 곤란해져 결국 국가안보와 국익에 막대한 공백·손실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¹²⁾.

국가안보실은 모든 국가기관은 직무수행 관련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정수단으로 타 국가기관 대상 협조 요청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만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는 제안 이유는 사실과 다르고, 타 기관의 지원이 없는 정보수집의 한계가 명백하여 안보공백 초려도 우려된다는 의견임¹³⁾.

국가정보원은 현행법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안보범죄 관련 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0) 「특별감찰관법」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2) “원은 타 기관 협조 없이 혐의자의 주민등록·출입국·차량 정보 및 CCTV 영상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 곤란”(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정원 의견」, 2024.7.)

13)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4.7.

외에도 방첩·대테러·국제범죄·사이버안보 관련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¹⁴⁾,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권한을 폐지할 경우 이러한 직무 수행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가령, 방위사업청에 대한 ‘군용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물자 판정 여부 사실조회·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북한화폐 특이사항 분석 요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국제범죄 연계자 추적 사실조회·확인’, 행정부처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협정보 확인’, ‘해킹 침해 발생 여부 확인’ 등을 수행하고 있음.

2.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폐지

현행법 제5조제2항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내란·외환·반란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 관련 직무수행¹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조사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조사권을 폐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15)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생략) ② <u>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 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u> ③ (생략) ④ <u>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5조(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및 협력) (생략) <u><삭제></u> (생략) <u><삭제></u>

연혁적으로 보면, 조사권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2020. 12. 5.)으로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 수사권을 폐지(2024. 1. 1. 시행)하면서, 관련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한 실효적 수단 마련 차원에서 신설한 것이었음.

당시 정보수집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권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무분

별한 조사권 행사의 통제를 위하여 조사 권한 남용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정보원 조사권의 법적 성격을 보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은 「행정조사기본법」 16)에 규정된 행정조사의 유형과 유사하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조사¹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위반행위 조사¹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16)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은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 ② (생략)

-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 ⑦ (생략)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한 법률」에 따른 법률 위반행위 조사¹⁹⁾,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세무조사²⁰⁾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²¹⁾ 등과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의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⑨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 목적·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략)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유사하게 조사의 실질이 범죄 수사에 유사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안보실 등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안보범죄 관련 실효적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조사권 유지가 필수적이고²²⁾, 형사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신문조사와 달리 강제처분이 아닌 행정조사권의 일종으로 모든 과정이 조사 대상자의 협조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²³⁾,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이 없고 피조사자의 거부 시 강제조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²⁴⁾, 동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 또는 조사 대상자의 출석·진술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서·출석요구서를 사전에 발송하여 임의조사임을 알리고 있고, 동 지침에 변호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조세법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법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법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법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법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법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법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2)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어 안보범죄 및 안보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대응을 위해서는 동 조사권이 필수적인바, 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에 해당함” (국가정보원, 전계 의견서)

“국가 존립을 직접 위협하는 안보범죄 대응에 있어 조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정보수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심각한 안보공백 초래가 우려됨” (국가안보실, 전계 의견서)

23) 국가정보원, 전계 의견서.

24) “대인적 행정조사 거부에 대해 물리력 행사는 영장주의를 무너뜨리며, 물리력 행사는 최소화시켜야 하므로 대물적 행정조사와 대인적 행정조사중 기본권 침해 정도가 적은 대물적 행정조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급박하다고 할지라도 대인적 조사거부에 대해 물리력 행사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재구·이호용, 「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법적 쟁점: 실무자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제35호 제2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입회인 등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임²⁵⁾.

반면, 형사절차에 비하면 통제가 미비한 행정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가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당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정립된 원칙들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형사절차에 활용되는 경우, 형사절차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보호를 잠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²⁶⁾²⁷⁾.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관련 세부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국가정보원법」에 조사 관련 준용법령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범위 규정²⁸⁾상

25) 국가정보원, 「정보위 수석전문위원실 요청자료」, 2024.11.

26) “사전에 진술거부권이 고지되고, 조서의 작성 방법이 법정되어 있으며,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 진술권 등이 보장되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반면(「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제3항), 그와 같은 절차규정이 미비한 행정조사에서 행정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대상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더 완화된 요건(「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하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국회입법조사처,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55호, 2022)

27) “피조사자는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채 행정조사를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행정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행정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수사기관은 이미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해 손쉽게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수사를 개시하는 단계에 진입하여 피의자로 전환되었을 때 비로소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 각종 기본권 보장 장치(미란다원칙, 영장주의 등)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략)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기 평등 원칙에 반한다.”(이재구·이호용, 전제 논문)

28)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국가정보원의 조사는 사안에 따라 동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즉, 현행법에 조사의 실시 근거 외에 조사의 목적·범위·절차·방법 및 준용법령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²⁹⁾ 보완입법 또는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³⁰⁾.

참고로, 당사자의 협조, 즉 인지 및 의사 확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행·감시, 채증, 「통신비밀보호법」³¹⁾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우편물 검열·감청) 등이 문제된 사례가 있으나,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³²⁾ 및 「안보침해 범죄 및 활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29) 유사한 실질적 수사활동 성격의 조사권 행사 내용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과 대비됨.

30) 최진옥,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위해사범 수사와 행정조사권』,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31)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查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4조³³⁾에 근거한 대응 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임.

결론적으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조사권한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과 더불어, 조사권한의 행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호 및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절차 마련, 현행 제도하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요건의 명확화, 해당 내용을 반영한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 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 33)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안보위해자”라 한다)을 발견·추적하는 활동
 2. 안보위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검증하거나 해당 분석·검증 결과를 유관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 등에 배포·공유하는 활동
 3. 안보위해자에 대한 역이용(逆利用), 와해(瓦解) 또는 추방 등의 저지(沮止) 활동
 4. 안보위해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의 지원에 관한 활동
 5.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하는 테러·피랍·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해외정보기관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인력 및 정보 등의 상호 협력 활동
 7. 그 밖에 안보위해자에 대한 확인·견제·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범죄정보의 제공 등 정보 공조체계 구축 의무 구체화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조체계 구축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가정보원이 각급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③ 국정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및 협력) 국정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취득한 범죄정보를 각급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각급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수집한 정보를 경찰에 이관하여야 함에도 선별적 정보 제공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 공조체계 구축 의무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수사권 폐지의 실효적 안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가정보원은 개정안의 취지가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정보 취득시

검증 등의 절차 없이 무조건 수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³⁴⁾, 또한 현행법상 국가정보원과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 의무’를 국가정보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일방적 수사 협력의무’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³⁵⁾는 의견임.

국가안보실은 개정안에 따른 일방적 정보 제공·협력 의무 부과보다는 현행 상호 협력·견제 방식이 권한 남용 방지에 효과적이며, 정보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를 수사기관에 무조건적·일방적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의 오용 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 공개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증대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음³⁶⁾.

현행법이 개정되고 수사·정보 협조체계가 가동되어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안보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이 이를 토대로 수사하면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이 유기적·실질적으로 작동되어 경찰 역량이 보완되고 수사 기능이 강화되

34) “원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관련 첩보를 수집한 후 그 신빙성을 검증하고, 정보출처·자산의 노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검증·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득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되면, 신빙성 없는 정보로 인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안보범죄 및 안보침해행위 관련 정보제공에도 동일 적용. 특히, 범죄정보를 검증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혐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풍문·음해성 정보까지도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 (국가정보원, 전계 의견서)

35) “일방적 협력의무로 인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에 종속되어 오히려 안보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내·수사가 개시된 사안의 경우에도, 정보기관의 종합적 상황 판단에 따라 배후 추적, 고도의 공작망 보호, 역용공작 등이 필요할 경우 수사의 일시 중단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은 일방적 수사 협력 의무가 규정될 경우, 위와 같은 정보기관의 요구의 근거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수사기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안보범죄 정보 수집 및 조사역량 저하 등 국가안보 저해 우려” (국가정보원, 전계 의견서)

36) 국가안보실, 전계 의견서.

게 하는 경험과 축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정보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성실한 협조 의무를 예시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범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석·평가·해석·검증되지 않은 첩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이해되지는 않으며, 정보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일방적·종속적 의무 부과로 보이지는 않음.

다만, 전부개정 당시 국가정보원과 각급 수사기관의 상호 협력을 규정한 취지와 더불어, 정보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중단 요청 필요성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의견에는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수집 정보의 신원조회 목적 활용 금지

개정안 제4조제5항은 국가정보원이 취득한 정보를 신원조회 등 인사에 관련된 절차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업무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직무)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조(직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정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취득한 정보를 신원조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에 관련된 절차에 활용할 수 없다.</u>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중앙행정부처 등으로부터 신원조사 의뢰를 받아 총 14,500여건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함.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³⁷⁾에 따른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및 「보안업무규정」(대통령

37)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령)38)에 근거39)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수행 중이라는 설명임.

그러나 신원조사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제한 또는 침해를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는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신원조사의 주체·대상·범위·한계·절차 등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40).

또한, 현행 「국가정보원법」 규정만으로는 어느 범주의 사람에게 어떤 수준과 범위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직책·직위에 관계 없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38)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삭제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9)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구 보안업무규정 제1조, 제33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6호, 제3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2020. 3. 17. 대통령훈령 제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국가보안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관생도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업무는 국가정보원이 법률에 근거하여 담당하는 고유 업무 중 하나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순차로 그 업무 권한을 위탁·위임받아 이를 실시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두34671 판결).

40) 국회입법조사처, 「신원조사제도 법률 근거 마련의 필요성」, 이슈와 논점 제1984호, 2022. 및 조정우, 「수사기관의 신원조사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미국신원조사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2017.

될 소지가 있으며,

국회 또는 시민사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견제가 어려운 국가정보원이 신원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신원조사의 과정 및 내용 등의 검증이 곤란하고 내국인 사찰 논란 등이 발생하므로, 해당 업무를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⁴¹⁾.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신원조사는 국가기밀 취급 인원의 충성심·신뢰성 등의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중국·러시아 등 외국 정보기관의 공세적 포섭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엄중한 안보환경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를 총괄하며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보안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부(公簿) 등에 대한 신원조회 정보 외에 대상자의 방첩·안보침해 행위 전력 등의 정보를 신원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보안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⁴²⁾.

국가안보실은 신원조사는 비밀 및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 장비 보호, 보안조사 등 국가 차원의 보안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정부 인사개입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안 제4조제5항은 불필요한

41) 엄기섭, 「신원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원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022, p.5. 및 조지훈, 「국가정보원의 반개혁적 퇴행에 대한 짧은 검토: 신원조사와 수사권 문제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기동민·김남국·김병기·김의겸·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국정원감시네트워크, 2023, pp.32~34.

42) 국가정보원, 전제 의견서.

조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⁴³⁾.

국가안전과 관련된 인사보안 정보활동 업무는 이를 각 임용기관 등이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신원조사 주체·범위 및 대상의 적정성, 법률상 근거의 명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614

43) 국가안보실, 전계 의견서.